

Yeosu Web Contents

2023년 12월 04일 06시 08분



목차

목차	2
주거환경개선사업	3
농어촌 주택개량사업	3
사업대상자	3
사업대상 지역	3
규모 및 지원기준	3
신청장소 및 문의	3
빈집정비사업	3
대상 및 지원금	3
신청장소 및 문의	4

주거환경개선사업	공동주택 현황	사업승인현황	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
건축허가동향	공동주택지원사업	공동주택관리	지역주택조합사업구역 현황

농어촌 주택개량사업

📌 사업대상자

- 농·어촌 지역에서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하는 농어촌주민(무주택자 포함)중 세대주인자
-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

📌 사업대상 지역

- 읍·면 지역 : 전지역
- 동지역 : 주거·상업·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

📌 규모 및 지원기준

- 주택규모 :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150㎡ 이하
- 용자금액 : 신·개축 최대 2억원, 증축 및 리모델링 1억원
- 이 율 : 연리 2% (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)

📌 신청장소 및 문의

- 신청장소 : 해당읍면동 주민센터
- 문 의 : 여수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(전화 : 659-4029)

빈집정비사업

📌 대상 및 지원금

- 대 상 : 1년이상 방치된 빈집
- 지원기준 : 동당 최대 300만원

신청장소 및 문의

- 신청장소 : 해당읍면동 주민센터
- 문 의 : 여수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(전화 : 659-4029)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